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11일, 송기헌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기헌의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조정 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나.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이광희 의원)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다수의 특례가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면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등 자치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 및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적정 수준과 범위를 검토·보완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